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

한국거래소 귀중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신고하며, 기재사항 중 거짓의 내용이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합니다.

2026년 6월 / 일

주식회사 LF

대표이사

오규식 (인)

오규식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주식회사 LF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5-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5-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5-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5-01-01	2024-01-01	2023-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5-12-31	2024-12-31	2023-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남궁선	성명 :	심재민
직급 :	재무관리실장	직급 :	매니저
부서 :	재무관리실	부서 :	금융BSU
전화번호 :	02-3441-8548	전화번호 :	02-6975-3477
이메일 :	snamgung@lfcorp.com	이메일 :	jasmine@lfcorp.com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	구분결 외 20인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57.48
		소액주주 지분율(%)	27.98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의류, 잡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X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주) 엘에프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1,882,430	1,956,268	1,900,726
(연결) 영업이익	168,111	126,140	57,379
(연결) 당기순이익	117,527	90,603	80,054
(연결) 자산총액	3,026,661	2,914,967	2,755,628
별도 자산총액	1,935,388	1,978,740	1,954,782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O	O	- 제20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 29일 전 소집공고(2026.02.25) 실시
전자투표 실시	O	O	- 제20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 실시 - 제19기 정기주주총회(2025.03.26)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O	-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개최일: 2026.03.26)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O	O	-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예측성 제고 목적 정관 개정(배당기준일: 이사회 결의로 결정) - 제19기 주주총회일(배당기준일) : 2025.03.26(2025.03.31) - 제20기 주주총회일(배당기준일) : 2026.03.26(2026.03.31)
배당정책 및 배당 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O	O	- 배당 실시 계획 통지 : O (2026.02.11 '배당결정' 공시 및 홈페이지 안내) - 2025년 사업연도 배당정책 통지 : O (2026.02.11 '공정공시' 공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O	O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 및 관련 내부 프로세스 운영 중, 후보자 육성을 위한 교육 실시 중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X	X	-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 : O -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정책 : X (향후 정책 마련 및 운영 검토 예정)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X	-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직 수행
집중투표제 채택	X	X	- 당사 정관에 따른 미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O	O	-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및 임원인사관리 규정에 명문화하여 운영 중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X	X	- 해당사항 없음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X	X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대표이사 산하 조직 (인사권 등이 감사위원회에 부여되어있지 않음)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O	- 보고기준일(2025.12.31) 기준 1인 : 윤창호 감사위원 - 제20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1인 → 2인 증원 : 윤창호 감사위원, 한재훈 감사위원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O	O	-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중('22년 1분기~)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O	-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게 회사의 경영관련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당사는 지배구조핵심지표 15개 중 10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브랜드를 통해 고객의 삶을 향상 시킨다."

당사는 이러한 경영미션에 따라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를 법령과 원칙에 따라 구성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8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 분야(패션·F&B·부동산금융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이사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선임하고, 이사총수 5명 중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사외이사 후보자의 회사 및 최대주주에 대한 독립성 여부, 전문 역량 등을 검증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등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및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효율적인 경영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당사 홈페이지(www.lfcorp.com)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8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4명의 사외이사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사내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에 따라 이사 총수의 4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요건을 상회하여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상법 상의 사외이사 요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임되었으며, 대주주 및 경영진과 당사의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의 제반 규제를 준수합니다.

또한, 당사는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경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 연령, 학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다각적 측면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구성원 4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구성원 5인 중 4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 또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능률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5.12.31) 현재 자산총액(별도)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주주권의 보호를 위해 당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총 4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기준일: 2026.05.31)

위원회명	구성(사외이사수/구성원수)	주요 역할
감사위원회	4/4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회계, 업무 감사/조사 3. 외부 감사인 선임 4.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평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5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 점검, 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보상위원회	4/4	1. 등기임원 연간 보수집행 현황 보고 2. 등기임원 연간 업무 성과 평가 3.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임원 보수 한도 심의
내부거래위원회	4/5	1.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따른 안건의 사전심의(회사와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를 심사 및 승인) 2. 상법 제542조의9에 따른 안건에 대한 승인(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의 승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거래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거래의 승인)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당사는 다양한 배경의 실무경험 또는 지식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회계·금융, 산업·무역, 마케팅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사외이사 각자가 보유한 전문역량을 극대화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위원회 별 지원부서 및 관련 부서들을 통해 사외이사의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전 사전보고 절차를 통해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총 4주 전에 금감원 DART시스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사항(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의안 등)을 DART 전자공시시스템과 KIND 기업공시채널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고,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여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주들의 주주권리행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한 제19기,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의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4주전에 공시하여, 주주들의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기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각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29일).

주주총회 이후 주주총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2026년도	2025년도
		제 20기 정기 주주총회	제 19기 정기 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O
소집결의일		2026-02-11	2025-02-11
소집공고일		2026-02-25	2025-02-25
주주총회개최일		2026-03-26	2025-03-26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29	29
개최장소		본점/서울시 강남구	본점/서울시 강남구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DART 전자공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DART 전자공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통지방법	하단 나.(1) 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나.(1) 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7명 중 6명 출석	7명 중 5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3명 중 3명 출석	3명 중 3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 4인(개인주주 4인) 2) 주요 발언요지 : 부동산개발 자회사 사업현황 질의, 배당정책 관련 계획 질의, 자기주식 보유 및 소각 관련 질의, 투자재원 활용 계획 질의	1) 발언주주 : 3인(기관주주 1인, 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요지 : 부동산개발 자회사 사업현황 질의, 자기주식 취득방식 관련 질의, 자기주식 보유 및 소각 관련 질의, M&A 관련 질의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현재 당사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있으며(주주총회 6주 전 소집결의 및 4주 전 소집공고), 주주들의 적법한 권리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의 영문 소집 통지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외국인 주주 대부분은 해외투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의 전문투자자로서 국내에 법률 대리인을 두고 있으며, 상임 대리인 또는 의결권 자문회사를 통해 주주총회 관련 정보 및 의결권 행사 자문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6일에 진행된 제20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사전 위임한 외국인 투자자의 주주총회 참여율은 72.2%로 충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별도의 영문 소집통지 없이도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글로벌 투자자를 위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영문 관련 정보제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에게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충분하고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여 주주들의 권리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주총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N(X)

당사는 정관상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일인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편의성을 높이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한국거래소가 주관한 [주주총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간(제20기, 제19기, 제18기)에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 참여 기회 확대 및 의결권 행사 용이성을 위해 2021년 제15기 주주총회부터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른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보고서제출일 가장 최근의 주주총회인 2026년 제20기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총회장에 오지 않아도 PC 및 모바일기기를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DART 전자공시 시스템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참고서류 및 위임장을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lfcorp.com/ko/about/irResult.do>)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3년간 평균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78% 이상이 행사되어(제20기 주주총회 : 80%, 제19기 주주총회 : 78%, 제18기 주주총회 : 78%) 서면투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통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 20기 정기 주주총회	제 19기 정기 주주총회	제 18기 정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6.03.25	2025.03.21	2024.03.22
	2026.03.27	2025.03.27	2024.03.27
	2026.03.30	2025.03.28	2024.03.29
정기주주총회일	2026-03-26	2025-03-26	2024-03-28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O	O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O	O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O	O	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당사는 주주총회 이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건별 출석주식수 대비 찬반비율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각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1)	(1) 중 의결 권 행사 주식 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가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20기 정기 주주총회	제1호 의안	보통(Ordinary)	제20기 (2025.01.01~2025.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포함]	가결(Approved)	26,665,614	21,287,080	21,161,796	99.4	125,284	0.6
	제2-1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의결권 대리 행사 증명 서류추가	가결(Approved)	26,665,614	21,287,080	21,193,818	99.6	93,262	0.4
	제2-2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위원 수 증원	가결(Approved)	26,665,614	21,287,080	21,206,324	99.6	80,756	0.4
	제2-3호 의안	특별(Extraordinary)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결의요건 변경	가결(Approved)	26,665,614	21,287,080	21,195,193	99.6	91,887	0.4
	제3호 의안	보통(Ordinary)	사외이사(1인) 선임의건 - 후보 한재훈	가결(Approved)	26,665,614	21,287,080	21,187,066	99.5	100,014	0.5
	제4호 의안	보통(Ordinary)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1인) 선임의 건 - 후보 한재훈	가결(Approved)	15,605,909	10,227,375	10,134,335	99.1	93,040	0.9
	제5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1인) 선임의 건 - 후보 윤창호	가결(Approved)	15,605,909	10,227,375	9,311,747	91.0	915,628	9.0
	제6호 의안	보통(Ordinary)	2026년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1,049,693	15,671,159	14,145,004	90.3	1,526,155	9.7
제19기 정기 주주총회	제1호 의안	보통(Ordinary)	제19기 (2024.01.01~2024.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포함]	가결(Approved)	27,449,639	21,361,719	21,134,537	98.9	227,182	1.1
	제2-1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후보 김상균 (재선임)	가결(Approved)	27,449,639	21,361,719	21,211,019	99.3	150,700	0.7
	제2-2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김유일(신규선임)	가결(Approved)	27,449,639	21,361,719	19,555,081	91.5	1,806,638	8.5
	제2-3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 김재홍(재선임)	가결(Approved)	27,449,639	21,361,719	20,962,315	98.1	399,404	1.9
	제3호 의안	보통(Ordinary)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1인) - 감사위원 후보 김재홍 (재선임)	가결(Approved)	16,232,640	10,144,720	9,730,578	95.9	414,142	4.1
	제4호 의안	보통(Ordinary)	2025년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27,449,639	21,361,719	21,151,986	99.0	209,733	1.0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중 부결되거나 반대 비율이 높은 안건은 없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충분한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 의장은 성실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및 전자투표제도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주주가 주주총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총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주주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주제안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절차 등을 당사 홈페이지(www.lfcorp.com)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및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주주제안을 처리 절차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는 없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법 제 363조의2(주주제안권)에 근거하여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제안주주의 자격요건 및 제안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주주총회 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며, 제안주주에게 그 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주주제안 절차를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각 안건들에 대해서 의장은 주주들이 자유롭게 발언과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 등이 충분히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본 공시대상시작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주주총회 시 주주제안권의 행사는 없었으며, 향후 주주제안권이 행사된다면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주주제안 관련 내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배당/자사주매입을 통한 주주환원정책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4년 결산 배당부터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배당가능금액 예측 가능성 제공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기준일 전 이사회결의를 통해 2025년 사업연도의 배당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주 배당재원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의 20% 내외로 하되, 배당재원이 주당 500원 미만 시, 최저 주당 500원(액면가 5,000원 기준)을 배당합니다. 상기의 당사 배당정책은 2026년 2월 11일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를 통해 안내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7일 주주환원정책(수시공정공시) 발표를 통해 3년간 ('24~'26 사업연도) 매 사업연도마다 150억원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주주환원정책(각 사업연도별 세부 실행방안은 경영환경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발표 하였으며, '25년 사업연도에 자기주식 약 150억원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 보유 또는 처분에 대한 처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Y(O)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당사는 주주환원정책과 관련된 배당정책을 수립 시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사회 직후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정책과 관련된 별도의 영문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Y(O)

시행 여부 Y(O)

당사는 정부의 배당절차 개선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매결산기 이전 이사회가 정하는 날로 할 것을 정관에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제19기 및 제20기의 배당은 표 1-4-1과 같이 주주총회 이후로 기준일을 설정하여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들의 투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배당액 확정일이 배당기준일보다 앞서도록 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제 20기 배당	12월(Dec)	O	2026-03-31	2026-03-26	O
제 19기 배당	12월(Dec)	O	2025-03-31	2025-03-26	O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시 정관변경을 통해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주주환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예정이며, 주주환원 정책 수립 및 정보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2006년 분할 신설 이후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한 바가 없으며, 지속적으로 연 1회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
당기	보통주	2025년	12월(Dec)		1,169,240,418,362	18,506,793,200	700	3.4
	종류주							
전기	보통주	2024년	12월(Dec)		1,127,906,533,752	19,214,747,300	700	4.3
	종류주							
전전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1,095,956,884,386	19,922,000,000	700	5.1
	종류주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18.71	25.46	24.14
개별기준 (%)	18.76	24.78	24.20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당사는 2024년 3월 7일 주주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공정공시)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주환원 기간 : 3년(2024년 ~ 2026년)

2) 주주환원 방법 : 자기주식 취득

3) 주주환원 규모 : 주주환원 기간 동안 매 사업연도 마다 150억원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별 세부 실행 방안은 경영환경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각각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2024~2025년 사업연도 자기주식 취득완료 금액 : 302억원('24년 152억, '25년 150억)

보고서 작성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계획은 정해진 사항이 없으나,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처분 또는 소각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보유 또는 처분할 계획입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꾸준히 배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24년 사업연도부터는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 권리 존중을 위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12.31) 현재,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80,00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며, 당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는 29,240,000주입니다. 당사의 주식은 보통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자기주식 2,574,386주를 제외한 26,665,614주입니다. 공시대상기간 종료일 이후 자기주식 227,338주를 취득함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의결권있는 자기주식 수는 26,438,276주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80,000,000	0	8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29,240,000	36.55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아, 별도 개최된 종류주주총회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식은 보통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정관 제21조(의결권)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보통주 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갖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투자자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주주 및 국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탐방 미팅 및 전화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월, 5월, 8월, 11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정 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며, 2023년 8월부터 매 분기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정기 NDR 미팅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액주주와의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직접적인 대화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당사 홈페이지에 IR 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게시하여 소액주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IR 활동 개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2-1-1-3)주요 IR, 컨퍼런스 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소액주주와 구분하여 기재)

일자	대상	형식	주요내용	비고
2022.01.01. 2022.12.31.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 탐방 미팅, 컨퍼런스콜	LF 및 연결중속회사 전반에 걸친 영업실적, 주요 경영 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16회
2023.01.01. ~2023.12.31.	국내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기업 탐방 미팅, NDR	LF 및 연결중속회사 전반에 걸친 영업실적, 주요 경영 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13회
2024.01.01. ~2024.12.31.	국내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기업 탐방 미팅, NDR	LF 및 연결중속회사 전반에 걸친 영업실적, 주요 경영 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19회
2025.01.01. ~2025.12.31.	국내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기업 탐방 미팅, NDR, 컨퍼런스콜	LF 및 연결중속회사 전반에 걸친 영업실적, 주요 경영 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29회
2026.01.01. ~2026.06.01.	국내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기업 탐방 미팅	LF 및 연결중속회사 전반에 걸친 영업실적, 주요 경영 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3회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소액주주와의 별도의 공식적인 소통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 IR 담당자 연락처를 게시하여, 개인주주와의 유선 통화를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해외투자자의 기업탐방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영업실적 및 전반적인 사업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미팅에 회사 임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IR 실무담당자가 주관하였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홈페이지 내 COMPANY>투자정보>IR CONTACT 를 통해 IR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및 회사주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N(X)

영문공시 비율 0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적용 법인에 해당합니다. 2026년 3월 31일 제출한 '정기주주총회결과'의 영문공시(Outcome of Annual Share holders' Meeting)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영문공시 대상 보고서에 대하여 영문공시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와 IR 담당자 연락처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들은 필요에 따라 증권사를 통하거나 직접 당사 IR 담당 부서로 언제든지 쉽게 컨택할 수 있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에게 회사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의 공정성을 위해 실적 발표일 이전 2주 동안은 IR활동을 중단하는 등 주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며 공정한 방법으로 당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부 제출한 '정기주주총회결과'의 영문공시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개정된 공시 규정에 따라 영문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영문공시 의무화 2단계 적용에 따라 주요사항에 대하여 영문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의무사항 외의 보고서에 대한 영문공시를 진행하도록 노력하며 영문공시 비율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 보호를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 따라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규정 제11조(부의사항)에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35조(이사회 결의방법)에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공시관리규정 제7조(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에 따라 임직원이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수관계자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통해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당사는 2023년 2월 13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내부거래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신설하여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 상 이사회 승인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음으로써 내부통제 정책을 보다 실질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당사는 상법 제398조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따라 이사회 사전 결의가 필요한 거래에 대하여 기간, 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이사회에서 승인받지 않고 해당 거래 건 별로 이사회 승인 및 의결을 득하여 자기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13일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이후에는 해당 내부거래에 대해 내부거래위원회에서 거래 건 별로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승인 받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게 내부통제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특수관계자에 대한 담보 및 보증내역]

(*) TetonBros.의 상품매입대금 JPY 210,000,000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차입금한도보증 외에 (주)LF스퀘어씨사이드의 조성사업 협약이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종속기업인 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피에프브이(주)의 프로젝트 금융 관련하여 당사가 대주단에 제공한 담보내역으로, 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피에프브이(주)가 보유중인 유형자산을 담보로 한 부동산담보신탁수익증권에 추가하여 당사가 보유중인 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피에프브이(주)의 주식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 종속회사인 (주)비알케이컴퍼니의 로열티 지급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llegible]

회 사 명	제 20(당) 기						제 19(전) 기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등		매입 등			
	상제품	기타(*2)	재고자산 매입	지급 수수료	판매 수수료	기타	상제품	기타(*2)	재고자산 매입	지급 수수료	판매 수수	
코람코멀티블라인드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28호	-	10	-	-	-	-	-	337	-	-		
(주)비알케이컴퍼니	-	35	-	-	-	-	-	20	-	-		
(주)해우촌	-	-	-	-	-	45	-	-	-	-		
기타 특수관계자:												
(주)파스텔세상	-	799	-	-	-	-	-	2,387	-	-		
(주)트라이본즈	-	2,920	-	-	-	-	-	2,882	-	-		
(주)엘에프네트웍스	7,748	599	-	782	-	3	11,566	586	-	839		
(주)LF디앤엘	-	35	-	22	-	55	-	-	-	20		
합 계	25,050	13,406	13,055	4,657	11,189	7,972	24,516	11,280	11,754	6,439	17,1	
(*1) 종속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매출 · 매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주)코람코자산신탁, 코람코Pre-IPO공모주전문투자자형사모투자신탁제22호, 코람코멀티블라인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8호, 코람코멀티블라인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7호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배당금수익입니다.												
(*3) 당기 중 (주)엘에프푸드와 합병하였으며, 합병 전까지의 거래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당기 중 만기 청산되었으며, 청산 전까지의 거래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및 지분거래]												
(단위: 백만원)												
회 사 명	출자 및 지분취득	투자지분 회수 등	배당금 수취	자금대여거래								
				대여								
종속기업:												
(주)엘에프푸드	-	-	-	55,000								
(주)LF스퀘어씨사이드	7,000	-	-	2,500								
(주)엘앤씨	450	-	-	-								
코람코Pre-IPO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호	-	110	7	-								
코람코멀티블라인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7호	-	2,567	1,086	-								
코람코멀티블라인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8호	-	2,891	10	-								
(주)코람코자산신탁	-	-	3,234	-								
주식회사 미라벨컴퍼니(*)	2,001	-	-	-								
스마트네이처투자조합1호(*)	1,800	-	-	-								
공동기업:												
메자닌그로쓰신기술투자조합	200	1,852	-	-								
관계기업:												
케이스퀘어부산장림데이터센터PFV(*)	10,000	-	-	-								
나우농식품센터더리투자펀드 1호	-	116	-	-								
사이버시큐리티이노베이션투자조합	1,050	-	-	-								
(*) 당기 중 신규 취득 하였습니다.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
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규정상 부의사항으로 명시함과 더불어, 전원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독립적인 시각에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주주보호 방안 외에 별도의 장치는 없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는 경우, 상법 및 당사 이사회 규정 제11조(부의사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승인할 예정이며, 상시 회사 홈페이지 및 IR 담당자 이메일, 직접 유선통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과 관련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과 관련한 거래가 없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계획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해당 거래 발생 시에는 소액주주 권리보호와 반대주주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소통하겠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 조달사항이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간 이해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이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한 내역이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법에 의거한 주주제안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있으며, 주주총회 시 소액주주가 자유롭게 의견을 발언할 수 있도록 청취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당사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영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 시 지체없이 공시하며 주주가 적시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필요 시 명문화된 관련 정책 수립도 검토하겠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법령과 정관에 정한 사항을 의결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 의사결정기구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주요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필수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 이외에도, 차년도 사업계획 등 회사의 사업방향에 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여 이사회 운영 및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분기 개최되는 정기이사회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 등은 이사회 규정 제 11조(부의사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정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당사 정관 제35조(이사회의 결의방법)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결의방법)에 의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법 및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부의사항)]

구 분	내 용
상법상의 이사회의 결의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공동대표의 결정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주의 처리 -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 사채의 모집 -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 이사의 경업 승인 -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위원회 결의에 대한 재결의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주식배당 - 자본감소 - 정관 변경 안 -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안 - 이사 및 감사의 보수안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 자산재평가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 자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 전략적 사업방향 - 당년도 업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인사관련 사항	- 회장, 부회장, 사장에 관한 인사 및 보수 -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에 관한 인사 및 보수는 임원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타사항	-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상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 외에, 전략적 사업방향, 당년도 업적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목표합의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써 사업 전반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회사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규정 내에 세부기준(상기 별표 참조)을 두고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는 사전에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안을 인지, 검토 및 판단하고 있으며,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회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는 정관 제32조 및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대표이사의 선/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위원의 선/해임, 정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구성은 사외이사가 전원으로 구성 또는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선임, 경영진의 보상, 자기거래 또는 내부거래 등을 심의함에 있어서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아래 4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회계, 업무 감사/조사, 외부 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평가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 점검, 보완,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내부거래위원회 : 회사와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를 심사 및 승인, 상법 상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의 승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거래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거래의 승인
- 보상위원회 : 등기임원 연간 보수집행 현황 보고, 등기임원 연간 업무 성과 평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임원 보수 한도 심의

각 위원회의 역할, 인원 등 세부사항은 [III. 기업지배구조 현황 - 1. 기업지배구조일반정책 - 나.] 에서 기재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후보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Y(O)

당사는 경영공백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31일 '최고경영자 승계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을 통해 승계정책 운영주체, 최고 경영자 후보군 선정기준과 관리 및 교육, 승계 절차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28조 및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R담당 부서에서 후보군의 관리·평가 및 기타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은 승계 규정에 따라 관련 업계 경력, 윤리실천 준수, 리더십 역량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최고 경영자의 임기만료 시 임기만료일 60일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며 '최고 경영자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만약 최고 경영자의 사임·해임·유고 등 비상 시 즉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며, 업무 공백은 차상위 직급의 임원이 공백기간동안 최고 경영자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Y(O)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에 대한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을 마련하여 해당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를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는 회사의 목표와 업무에 대한 전략과 비전,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고 당사의 윤리 헌장, 임직원 윤리실천 경영 지침을 준수하는 임원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후보는 관련 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 업계에서 최소 임원(미등기 포함) 이상의 직급을 수행한 자여야 합니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및 잠재적 후보군인 미등기임원을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 주관부서에서는 임원의 선임에 있어 사내 윤리 헌장, 인사 평가 결과, 다면진단 등에 입각하여 전문성 및 리더십이 있는 임원을 선임하고 기업가치 훼손에 우려가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리더십(리더십 향상 과정 등) 교육, 경영 역량 개발(최고경영자 과정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다면진단 및 1대1 피드백/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 및 잠재적 후보군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영실적, 조직문화 등의 종합적인 임원 리뷰 평가를 통하여 임원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Y(O)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교육명		내용	대상
'25년	9월	리더십 다면 진단	리더십 360도 다면 진단	全 임원
	10월	임원세미나	21세기 리더의 핵심역량과 세대돌봄 기술	全 임원
	10월	비즈니스 세미나	글로벌 시니어 비즈니스 교육 과정	임원 1명
	연간	Global Language Course	Global Language (영어/일어)	임원 10명
	연간	Business Insight Learning	SERI CEO 멤버십	부문장
	연간	필수교육	법정 필수 교육	全 임원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최고 경영자 승계에 대한 규정' 제정 이후 승계정책의 개선 또는 보완사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지속적으로 승계정책을 보완 및 개선함으로써 최고 경영자의 교체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경영공백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정보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준법경영정책 및 리스크관리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N(X)

당사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책 및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회사의 내부 리스크 관리 및 통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주무 기관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분기마다 당사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감사 진행 경과 및 이를 통해 발견된 재무적 리스크와 그 조치 현황을 보고 받고 경영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경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그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리스크 예방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N(X)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을 선임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회사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임직원 모두가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경영의 실효성 있는 실천과 정착을 위하여 임직원들의 윤리행동강령인 'LF 윤리규범'을 바탕으로 경영진단실이 주관부서가 되어 매년 임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사이버 윤리경영 교육수강 및 윤리실천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부정/비리/금품수수 등 부당행위나 회사정책 부문의 개선 및 제안사항, 당사의 거래 관련 제반 불이익 사항 등에 관하여 '기업 내외부 모든 이해관계자들(임직원, 협력사 등)이 제보 및 상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센터, 사이버 신문고를 당사 홈페이지 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19년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의 기준과 절차,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지침 제정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전산수준의 통제를 설계하여 경영환경 및 업무변화에 따라 통제를 개선/보완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의 공시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이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개설 및 개최하는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기술서」 상 설계된 통제활동으로 분기별 공시사항 체크리스트 작성, 공시기준 금액적 중요성 확인, 공시내용의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시 정보의 수집부터 서류의 작성 및 보고까지 발생 되는 공시 위험을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 공시 조직은 공시자료 및 홈페이지 등에 공시담당자의 직통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게시함으로써,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1)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을 선임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회사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임직원 모두가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경영의 실효성 있는 실천과 정착을 위하여 임직원들의 윤리행동강령인 'LF 윤리규범'을 바탕으로 경영진단실이 주관부서가 되어 매년 임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사이버 윤리경영 교육수강 및 윤리실천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부정·비리·금품수수 등 부당행위나 회사정책 부문의 개선 및 제안사항, 당사의 거래 관련 제반 불이익 사항 등에 관하여 '기업 내외부 모든 이해관계자들(임직원, 협력사 등)이 제보 및 상담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센터, 사이버 신문고를 LF 홈페이지 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당사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책 및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회사의 내부 리스크 관리 및 통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주무 기관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활동과 별도로 투자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하여 투자심의 과정을 명문화하고 재무적 및 비재무적 리스크를 다각적으로 종합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대상과 상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에 관한 항목에서 설명하였습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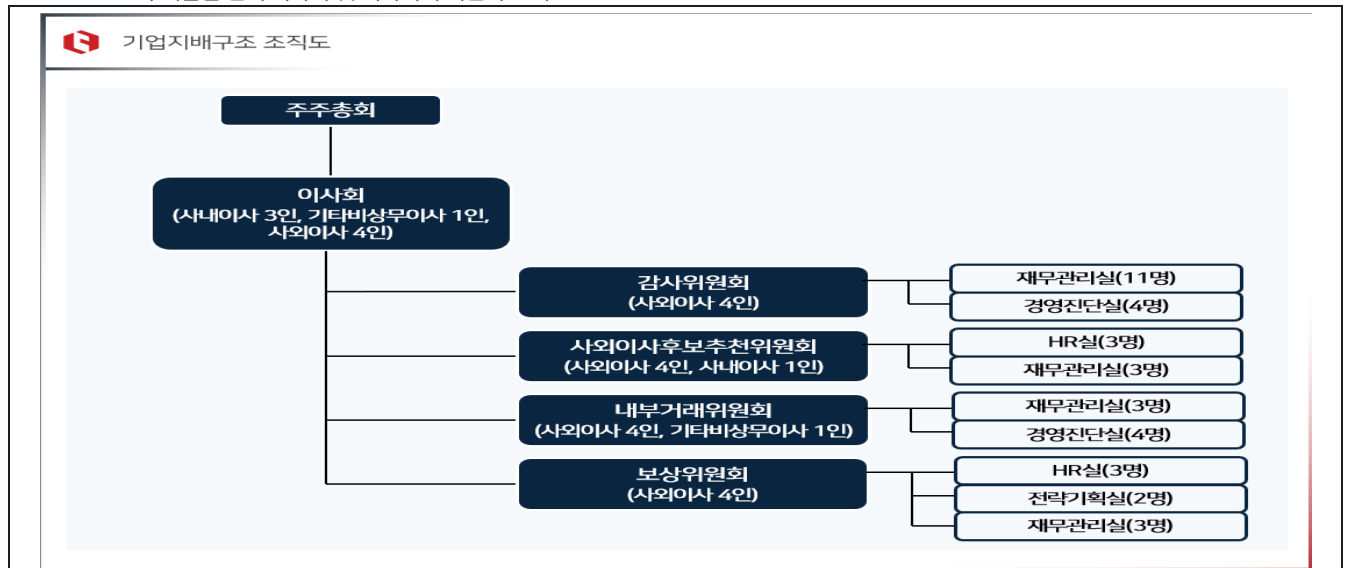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8명의 이사 중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산하 4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의 이사 총수는 8명이며, 이 중 사외이사는 4명으로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와 분리되어있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3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은 업계 전문가로서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4인은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을 선임하였으며, 재무·회계,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은 아래 표 4-1-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 (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구본걸	사내이사(Inside)	남(Male)	68	회장/이사회회장	271	2027-03-28	전사 경영전반	前 (주)LF 대표이사 現 (주)LF 회장
오규식	사내이사(Inside)	남(Male)	67	대표이사	305	2027-03-28	전사 경영전반	前 (주)LG패션 개발지원부부장/CFO 現 (주)LF 대표이사
김상균	사내이사(Inside)	남(Male)	56	대표이사	199	2028-03-26	전사 경영전반	前 (주)LG패션 신사캐주얼 부부장 前 (주)LF 라푸마복경법인장 前 (주)LF 영업운영부부장 前 (주)LF 신사/액세서리 부부장 現 (주)LF 대표이사
김유일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남(Male)	64	기타비상무이사	14	2028-03-26	금융 및 경영	前 (주)LG투자증권 지점장 前 (주)LF네트웍스 대표이사 前 (주)LF스퀘어씨사이드 대표이사 現 (주)코람코자산운용 기타비상무 이사
김재홍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8	사외이사/감사위원장	50	2028-03-26	산업 및 무역	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실장 前 (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사장 現 (주) LS일렉트릭 사외이사 現 (사) 한국수소연합 회장
박정근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6	사외이사/감사위원	62	2027-03-28	경영 및 마케팅	前 Purdue University 교수 前 University of Houston 교수 前 북미유통학회 회계이사 現 한국마케팅학회 상임이사 現 럭셔리 브랜드 연구소 소장 現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재훈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8	사외이사/감사위원	2	2029-03-26	회계 및 재무	前 LG산전 재경담당 / 상무 前 LS메탈 대표이사 前 LS일렉트릭 대표이사 前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前 GS건설 사외이사
윤창호	사내이사(Inside)	남(Male)	58	사외이사/감사위원	8	2029-03-26	금융 및 경제	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국장 前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前 한국증권금융(주) 대표이사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 부회장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령의 준수를 위해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아래 표 4-1-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 (명)	위원회 코드	비고
감사위원회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회계, 업무 감사/조사 3. 외부 감사인 선임 4.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평가	4	A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 점검, 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5	B	사외이사 4인, 사내이사 1인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 (명)	위원회 코드	비고
보상위원회	1. 등기임원 보수 집행 연간 현황 보고 2. 등기임원 연간 업무성과 평가 3.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임원 보수 한도 심의	4	C	사외이사 4인
내부거래위원회	1. 회사와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를 사전심사 2. 상법 상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의 승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거래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거래의 승인	5	D	사외이사 4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	김재홍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C,D
	박정근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C,D
	한재훈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C,D
	윤창호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C,D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재홍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C,D
	박정근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C,D
	한재훈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C,D
	윤창호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C,D
	오규식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
보상위원회	김재홍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D
	박정근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D
	한재훈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D
	윤창호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D
내부거래위원회	김재홍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C
	박정근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C
	한재훈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C
	윤창호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C
	김유일	위원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남(Male)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ESG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구분결 사내이사이며, 대표이사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았고, 선임사외이사 또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재무/회계, 산업, 금융, 경영/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사의 성별은 모두 단일성입니다.

가. 이사회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N(X)

당사는 그 역량 평가 및 이사 선임에 있어 연령, 성별, 학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면하는 현안을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의 자산총액은 2조원 미만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회는 모두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 4-2-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김상균	사내이사(Inside)	2019-03-29	2028-03-26	2025-03-26	재선임(Reappoint)	재직
김재홍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3-28	2028-03-26	2025-03-26	재선임(Reappoint)	재직
김유일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5-03-26	2028-03-26	2025-03-26	선임(Appoint)	재직
정연우	사내이사(Inside)	2019-03-29	2025-03-28	2025-03-28	만료(Expire)	
이역원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3-28	2026-03-27	2025-08-14	사임(Resign)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 기간(일)((2)- (1))	이사 후보 구 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19기 정기주총	김상균	2025-02-25	2025-03-26	29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에 추천 사유	재선임
	김유일	2025-02-25	2025-03-26	29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1.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에 추천 사유	신규선임
	김재홍	2025-02-25	2025-03-26	29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에 추천 사유	재선임
제20기 정기주총	한재훈	2025-02-25	2026-03-26	29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에 추천 사유	신규선임
	윤창호	2025-02-25	2026-03-26	29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에 추천 사유	신규선임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당사는 이사 선임 및 재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의 역량과 과거 활동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분기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외이사별 이사회 참석률 및 주요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시하여 주주들이 후보자의 이사의 충실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소집 공고 시에는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정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및 보수 현황 등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4주 전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상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당사는 정관 제25조 2항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 규정한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이사진 및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사진이 선임되고 있어 도입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내 4개의 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소수주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사진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이사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선임에 있어 관계법령 및 사내절차에 의거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구본걸	남(Male)	회장	O	회장 이사회위원장
오규식	남(Male)	대표이사	O	대표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김상균	남(Male)	대표이사	O	대표이사 패션사업총괄
김유일	남(Male)	기타비상무이사	X	기타비상무이사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김재홍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박정근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한재훈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윤창호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명	성별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권성훈	남	부문장	O	온라인사업부문장
윤정희	여	사업부장	O	닥스/마에스트로사업부장
이건욱	남	실장	O	HR실장, 홍보실장
김양규	남	실장	O	전략기획실장
남궁선	남	실장	O	재무관리실장
김인숙	여	사업부장	O	아떼사업부장
김수향	여	사업부장	O	여성컨템사업부장
이동원	남	본부장	O	ICT운영 BSU장
이전오	남	사업부장	O	Acc사업부장
조문재	남	사업부장	O	전략영업사업부장
김정규	남	사업부장	O	전략브랜드사업부장
정성문	남	본부장	O	영업본부장
김민수	남	사업부장	O	골프사업부장
안용섭	남	사업부장	O	해외사업부장
민진홍	남	실장	O	경영진단실장
최우일	남	사업부장	O	헤지스사업부장
허정현	남	사업부장	O	남성컨템사업부장
이상훈	남	실장	O	영업실장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을 선임할 경우에는 성과, 전문성,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인사관리 규정 제8조의2(기업가치 훼손 등 부적격 임원 선임 제한)에 판단기준, 판단주체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정책이 명문화 되어 있으며, 채용 및 임원 승진 시에 횡령 또는 배임 여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 행위 이력이 있어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기에 부적절한 자 여부를 사전 모니터링 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LF 윤리규범 및 임원 서약서 등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임원 징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임원의 책임을 다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분야별 후보군 중에서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실무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당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결의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로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외에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기업가치 훼손 등 부적격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제한)에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 선임 방지 관련 정책이 명문화(판단기준, 판단주체 및 절차) 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이사의 전문성과 개인적 역량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사물위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제기된 주주대표 소송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임원 선임 시 상법상 결격 요건 및 사외이사후추천위원회규정, 임원인사관리규정에 명문화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임원 여부를 검토하고, 문제 있는 임원 선임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임원 선임 시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는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외이사제도 운영을 위해 최초선임 절차부터 상법 등 제반 법률상요건 및 거래관계 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김재홍	51	51
박정근	63	63
한재훈	2	2
윤창호	7	7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 및 계열회사는 최근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가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 및 계열회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제2항 상 결격사유 및 거래관계 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를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한 사외이사 후보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수취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소집공고 시에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수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선임 이후로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이사회 운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당사는 수시로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점검을 진행하여, 상법상 결격사유 발생 및 당사와의 이해관계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회사는 상법 등 제반법률에 의거하여,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 극대화를 위해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 사외이사의 이사회 평균출석율은 100%이며, 당사의 사외이사는 겸직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규정된 겸직 관련 결격 요건(당사포함 2개 법인까지 겸직 가능)에 따라 회사의 사외이사 겸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사외이사들의 겸직 여부에 대한 현황을 개별적으로 이사들에게 확인하여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들의 겸직현황은 아래 표 5-2-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기관
김재홍	O	2022-03-28	2028-03-26	(사단법인) 한국수소연합 회장	LS ELECTRIC
박정근	O	2021-03-26	2027-03-28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한재훈	O	2026-03-26	2029-03-25	-	-
윤창호	O	2026-03-26	2029-03-25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 부회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의 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겸직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충실히 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성실히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제공 및 필요시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재무관리실, 경영진단실, 패션사업기획실, 전략기획실, HR실 등의 지원조직을 통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필요시 외부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는 재무관리실, 경영진단실, 전략기획실, HR실을 통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전담 직원들은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할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 자료의 제공, 기타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시행된 교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제공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주요 교육내용
2025년 12월 31일	삼일회계법인	윤창호 이사	- Audit Committee School 입문
2025년 12월 31일	삼일회계법인	윤창호 이사	- Corporate Director School (2024)
2025년 12월 31일	삼일회계법인	윤창호 이사	- Audit Committee School 보수 (2024)
2025년 12월 29일	삼일회계법인	김재홍 이사	- Corporate Director School
2025년 12월 30일	삼일회계법인	김재홍 이사	- Topics in focus : 감사
2025년 12월 24일	삼일회계법인	박정근 이사	- Audit Committee School 보수 (2022)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 내역은 없으며, 현재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체는 감사위원회 외에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전 충분한 사전 의안 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사외이사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 내역은 없지만, 이사회에서 사전 의안 설명 및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며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사외이사들이 충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사외이사로서 자유롭게 비판적인 의사 개진과 이사회 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평가 방식의 도입 여부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임기 만료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적격성 평가(전문성, 직무공정성, 충실성, 결격요건)를 통하여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사외이사 임기 만료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적격성 평가(전문성, 직무공정성, 충실성, 결격요건)를 통하여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임기 만료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적격성 평가(전문성, 직무공정성, 충실성, 결격요건)를 통하여 재선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재선임시 사외이사의 적격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동종업계 대비 적정 수준에서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상이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면 사외이사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평가와 보상을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며, 매년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독립성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활동 평가에 따른 별도의 성과급 지급이나 보수연동,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등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와 사외이사의 보수 연동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사외이사 업무의 독립성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 방식의 도입 여부는 현재 계획이 없으나, 향후에도 직무 책임과 위험성 및 동종업계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이사회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매 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주식회사 LF의 이사회는 정관 및 명문화된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6조(종류)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연 4회, 임시이사회는 필요 시 수시 소집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8조(소집절차)에 따라 이사회 소집 시 회일을 정하고 최소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고하거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즉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이사회 규정 제11조(부의사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관 제35조에 따라 결의요건,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행사 제한, 원격 통신수단을 활용한 출석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에는 총 10회(정기 4회, 임시 6회), 작성기준일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회(정기 1회, 임시 2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공시 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44건의 안건을 결의 또는 승인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 표 7-1-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出席률 (%)
정기	5	15	94
임시	8	5	85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Y(O)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당사의 이사보수한도와 성과평가 및 목표설정에 대한 사항은 전원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로만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고 있으며,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38조(이사의 보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보수의 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보수는 임원인사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직위와 직책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위원회에서 개인별 설정한 목표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사회에 보고 후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 등에게 관련 정책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회사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나 태만, 실수 등으로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모든 법률행위에 면책되거나 모든 손실금액에 대해 배상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취업규칙 및 LF윤리규범, 주기적인 임원 교육을 통해 직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관련한 내용을 안건이나 보고 사항으로 상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독립성이 보장된 보상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사의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이사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ESG와 관련된 명문화된 정책이나 설치기구는 보고 서제출일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이사들이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회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전에 이사회 소집통지를 진행함으로써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정관 제36조(의사록) 및 이사회 규정 제16조(의사록)에 따라 모든 이사회와 위원회에 대한 안건의 내용과 찬성여부 및 반대 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록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과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포함하여 당사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에 공개하여 이사회에서 책임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당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건 중 특정 이사와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자발적으로 이사회에 불참하였으며 출석률은 자발적 불참을 포함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2023.01.01~2025.12.31)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최근 3개년 평균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구분결	사내이사(Inside)	2006.11.01~현재	65	60	69	63	100	100	100	100
오규식	사내이사(Inside)	2003.11.01~현재	97	90	100	100	100	100	100	100
김상균	사내이사(Inside)	2019.03.29~현재	87	90	77	100	100	100	100	100
정연우	사내이사(Inside)	2019.03.29~2025.03.28	91	0	100	100	100		100	100
김유일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5.03.26~현재	100	100			100	100		
이석준	사외이사(Independent)	2019.03.29~2023.04.13	0			0				
김재홍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3.28~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박정근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3.26~현재	90	100	85	88	100	100	100	100
이억원	사외이사(Independent)	2023.03.28~2025.08.1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윤창호	사외이사(Independent)	2025.10.17~현재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당사는 정기공시를 통해 이사회 개최내역 및 안건별 이사의 출석/찬성여부를 상세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공시 외의 방법으로 개별이사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사록만으로도 충분하게 자세한 이사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과 출석을 및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포함하여 당사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에 공개하여 이사회 활성화와 책임 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매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능률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 모두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였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보고서 작성 기준일(202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총 4명)으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는 보상위원회의 구성원을 전원 사외이사(총 4명)으로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산하 4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각 위원회의 구성원을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 기준, 보상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 3명에 기타비상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였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상위원회의 구성을 전원 사외이사(4명)으로 변경함으로써 독립적인 시각에서 경영진의 보수를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26년 5월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보상위원회의 구성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위원회의 구성을 사외이사 과반수로 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각 위원회별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한 규정을 두어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 구성, 권한 및 책임, 소집, 결의방법, 부의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각 위원회의 규정 내에 공시대상기간 중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각 위원들의 출석 및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분기·반기보고서 포함)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들의 출석 및 참여 현황 등을 이사 재선임 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역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평가하는 역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도 재무제표 감사 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의사소통하면서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 운영, 권한 등에 대한 사항을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부원칙 9-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관련법규(상법 제542조의8)에 의거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2021년 03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선임 및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보상위원회

당사는 2021년 03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상위원회는 이사의 보수한도 및 보상체계,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12.31) 현재 보상위원회의 구성은 사외이사 3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이며, 보고서제출일 현재 구성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제고하였습니다.

(4) 내부거래위원회

당사는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로 2023년 2월 13일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의 구성은 사외이사 3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이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사는 이사회 승인 전 미리 내부거래위원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각 위원회는 정기 또는 필요시마다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하거나 경영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03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23년 2월 13일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는 부의사항과 이사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각 규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일 이내에 각 이사에 게 통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또한 부의사항과 이사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 (이사회보고) 中 1.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와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25-1차	2025-02-11	3	4	결의(Resolution)	1)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김재홍 이사 재선임	가결(Approved)	O
	이사-26-1차	2026-02-11	3	4	결의(Resolution)	1)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한재훈, 윤창호 이사 신규선임	가결(Approved)	O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내부거래위원회	내부-25-1차	2025-02-21	4	4	결의(Resolution)	1) 주식근질권 설정계약 해제 및 신규 설정의 건	가결(Approved)	O
	내부-25-2차	2025-03-26	3	4	결의(Resolution)	1)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O
	내부-25-3차	2025-06-02	4	4	결의(Resolution)	1) 이사회 상정 안건 심의의 건 :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O
	내부-25-4차	2025-07-28	4	4	결의(Resolution)	1) 이사회 상정 안건 심의의 건 :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O
	내부-25-5차	2025-08-11	4	4	결의(Resolution)	1) 자회사 LF푸드 대여금 집행의 건	가결(Approved)	O
	내부-26-1차	2026-05-06				(추후 기재예정)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1) 감사위원회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감사-25-1차	2025-02-11	3	3	결의(Resolution)	1. 제19기(2024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결의(Resolution)	2. 2025년~2027년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의 건
					보고(Report)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보고
					보고(Report)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감사-25-2차	2025-06-02	3	3	결의(Resolution)	1. 2025년 용역 업무 수행에 대한 사전 동의 요청의 건
					결의(Resolution)	2. 내부회계관리규정 변경의 건
					보고(Report)	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 보고
	감사-25-3차	2025-08-26	2	3	보고(Report)	1. 2025년 상반기 재무제표 현황보고
					보고(Report)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평가 보고
	감사-25-4차	2025-12-17	3	3	보고(Report)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평가 보고
	감사-26-1차	2026-02-11	3	3	결의(Resolution)	1. 제20기(2025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보고(Report)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보고
					보고(Report)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2) 보상위원회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구분	내용
보상위원회	보상-25-1차	2025-02-11	3	4	결의(Resolution)	1. 2024년 성과 평가 및 2025년 목표 설정
					결의(Resolution)	2. 주주총회에 제출할 이사의 보수 한도
	보상-26-1차	2026-02-11	4	4	결의(Resolution)	1. 2025년 성과 평가 및 2026년 목표 설정
					결의(Resolution)	2. 주주총회에 제출할 이사의 보수 한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각 이사회 내 위원회들은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이 명문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결의 사항들은 이사회로 신속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는 명문 규정을 통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결의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명문화된 규정을 갖추고 충분한 교육, 지원을 제공받고 있으나, 독립된 지원 조직은 확보되어있지 않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장은 김재홍 사외이사이며, 회계·재무전문가 2명을 포함한 총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 9-1-1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김재홍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실장 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前 (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사장 現 (사) 한국수소연합 회장 現 LS ELECTRIC(주) 사외이사	
박정근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前 Purdue University 교수 前 University of Houston 교수 前 북미유통학회 회계이사 現 한국마케팅학회 상임이사 現 럭셔리 브랜드 연구소 소장 現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재훈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前 LG산전 재경담당 / 상무 前 LS메탈 대표이사 前 LS일렉트릭 대표이사 前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前 GS건설 사외이사	회계·재무전문가
윤창호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국장 前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前 한국증권금융(주) 대표이사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 부회장	회계·재무전문가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한 2명의 감사위원회 위원에 되는 사외이사와 2명의 일괄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리스크 예방 및 개정에정 상법 준수를 위하여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한재훈 사외이사, 윤창호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였습니다.

한재훈 사외이사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상장회사인 LS일렉트릭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여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의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윤창호 사외이사는 1993년부터 2021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에 따른 재무전문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감사위원이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와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감사위원 선정 시 판단하고 또한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감사위원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정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와 회계 감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감사위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 감사위원회는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위원회규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및 운영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조직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임·유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권한>

- ① 업무감사권
- ② 영업보고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 ③ 이사보고의 수령권
- ④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 ⑤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⑥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 요청
- ⑦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에 관한 권한

<주요책임>

- ① 선관주의 의무
- ②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 ③ 이사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 ④ 감사록의 작성 의무
- ⑤ 외감법상의 의무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 2025.01.01.~보고서 제출일 현재 교육 제공 현황

교육과정명	교육실시주체	참석자	수료여부	수료일
Audit Committee School 입문	삼일회계법인	윤창호	수료	2025-12-31
(신규) Corporate Director School (2024)	삼일회계법인	윤창호	수료	2025-12-31
(신규) Audit Committee School 보수 (2024)	삼일회계법인	윤창호	수료	2025-12-31
Corporate Director School (2022)	삼일회계법인	김재홍	수료	2025-12-29
Topics in focus : 감사	삼일회계법인	김재홍	수료	2025-12-30
Audit Committee School 보수 (2022)	삼일회계법인	박정근	수료	2025-12-24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6조(관계인의 출석 등)에 따라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12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의거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6조에따라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회사의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규정 제16조에 의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당사가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지원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재무관리실	11명	실장 1명, 팀장 1명, 매니저 9명 (평균 12년)	- 감사위원회 보고 및 심의 안건 자료준비, - 위원회 운영 지원, 감사위원 대상 교육 지원
경영진단실	7명	실장 1명, 매니저 6명 (평균 14년)	- 감사위원회 업무지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지원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N(X)

당사의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인 경영진단실 및 재무관리실은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부서는 아니며, 구성원에 대하여 내부감사기구에게 인사권이나 동의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당사는 사외이사를 전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0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이며, 본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당사는 이를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내부 규정을 통해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 내역을 공시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도에는 총 4회, 2026년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1회 개최되었으며, 총 13건의 안건(결의 5건, 보고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결산 이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사회에 운영실태 평가를 보고합니다. 해당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37조(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부의사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감사위원회가 수시로 회사의 업무와 감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규정 제14조에 따라 의사록을 서면으로 작성, 보존, 관리함은 물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와 관련한 사항이 정기주주총회에 적정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사전 보고하는 등의 내부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계 및 업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세부원칙 8-2의 가-(4) 내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2025.12.31로부터 최근 3개년 개별이사의 출석내역은 아래 표 9-2-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김재홍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100
이석준	사외이사(Independent)	0			0
박정근		100	100	100	100
이억원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100
윤창호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100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재무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제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독하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당사는 모든 감사위원이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활동내역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검토하고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위원회는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 감사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신뢰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제21조(독립성확보)에 따라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비감사 용역을 체결하거나,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 용역 체결을 체결하거나,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성공보수 약정 및 3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자가 참여한 내역은 없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 감사위원회에서는 2025년 2월 11일에 개최된 25년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당사 정관 제37조(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선임)에 따라 2025년~2027년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감사위원들은 엄격한 평가기준에 따라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 평가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공시대상기간 동안 적절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일정 및 요청자료에 대하여 당사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협의된 계획대로 감사를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요구 사항은 없었으며, 외부감사 담당 이사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문서로 정한 사항(감사인인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이 준수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에 명시된 독립성에 위반되는 업무와 그렇지 아니한 통상적인 업무를 구분하여 비감사용역을 사전승인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동안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체결된 비감사용역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제20기(당기)	2024.10.25	2024년 세무조정	2024.10.25 ~ 2025.07.03	10백만원
	2025.01.31	2024년 글로벌최저한세	2025.01.31 ~ 2025.03.13	28백만원
	2025.08.12	2025년 세무조정	2025.08.12 ~ 2026.04.30	11백만원
	2025.10.17	2024년 통합기업보고서	2025.10.17 ~ 2025.12.30	9백만원
	2025.12.01	2025년 글로벌최저한세	2025.12.01 ~ 2027.03.31	30백만원
	2025.12.31	해외현지법인 청산자문	2025.12.31 ~ 2026.01.05	40백만원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위원회는 회사와 산업에 대한 이해, 감사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신뢰성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제21조(독립성확보)에 따라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지속 해서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경영진의 참석 없이 매 분기마다 최소 1회씩 대면회의를 진행하여 각 분기마다 면밀한 감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외부감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하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당사 내부감사기구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진행 방식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1차	2025-02-11	1분기(1Q)	대면회의	감사위원회 3인 외부감사인 업 무수행이사 등 2 인	1) 회계감사 진행상황 논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논의 3) 기타사항 논의

	개최일자	분기	진행 방식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2차	2025-06-02	2분기(2Q)	대면회의	감사위원회 3인 외부감사인 업무수행이사 2인	1) 비감사용역 관련 사전심의 및 논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관련 논의 3) 기타사항 논의
3차	2025-08-26	3분기(3Q)	대면회의	감사위원회 2인 외부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등 2인	1) 상반기 재무제표 현황 관련 논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및 논의 3) 기타사항 논의
4차	2025-12-17	4분기(4Q)	대면회의	감사위원회 3인 외부감사인업무수행이사 등 2인	1)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평가 및 논의 2) 기타사항 논의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당사 내부감사기구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주요 협의 내용은 ‘핵심 감사사항, 유의한 위험, 감사계획, 감사결과, 유의한 회계 정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감사수수료 및 회계법인의 독립성’ 등입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직무수행 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 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2025년 주주총회	2025-03-26	2025-01-21	2025-02-04	안진회계법인
2026년 주주총회	2026-03-26	2026-01-21	2026-01-30	삼일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내부 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참석 없이 독립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향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를 검토하겠습니다.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	이사회 참여 여부	관련 이사회 일자	주요 논의 내용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지 않아, 주주 및 시장참여자과 소통한 사실이 없습니다.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	소통 대상	소통 채널	임원 참여 여부	주요 소통 내용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측면의 책임 수행 관련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기견 후원 수익금 기부 CSR 활동의 일환으로 '헤지스'의 해피퍼피 캠페인을 통하여 제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와 지원금을 유기 동물 보호 센터(ON CENTER)에 반려동물 복지 증진 사업 기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협력사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실현을 위하여 협력업체 금융 및 기술, 교육지원, ESG 실사진단 지원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4년 동반성장지수 등급 '우수' 및 공정거래위원회 이행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서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탄소 배출량 감축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5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장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물류 패키징 솔루션의 카톤랩 가동으로 연간 포장박스 410톤을 절감 및 헤지스 재생펄프 30%가 포함된 패키징 적용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친환경 경영 내재화를 위해 임직원 인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투자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는 주주, 고객을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재를 부과받거나 소송이 진행된 바가 없음은 물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 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써, 당사는 2023년 2월 13일 이사회 회의 결의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사회 승인 전 미리 내부거래위원회에서 발생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보고하고 내부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별첨 : 정관,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보상위원회 규정,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LF 윤리 규범 및 실천지침